



프로폴리스주물물 주세법 적용제외

제4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결정

지난 수년간 양봉농가의 숙원이던 프로폴리스의 주세법 관련 민원이 주세 부과를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정부종합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2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양봉협회가 건의한 「양봉산물인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주세법 적용제외 안건」논의에서,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프로폴리스의 특성 상 음용시 알콜농도가 1%미만이므로 주류로 보기 곤란하다는 본 협회의 주장에 따라,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8월 중에 마련·운용하고 추후 주세법 개정시 프로폴리스 및 유사 식품이 주류에 해당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안을 통과 시켰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 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프로폴리스안건을 비롯한 총 7건의 각 기업 및 단체 애로사항이 상정·처리 되었다.

프로폴리스의 주세법 적용 제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던 본 협회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 애로해소센터를 찾아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그 안건이 채택되어 이날 회의에 상정된 것 이었다.

2번째로 상정된 프로폴리스의 주세법제외에 대한 안건에서 발제자로 나선 손재형 연구소장은 현 양봉업계 현황과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후 국내의 엄격한 주세법 적용으로 인해 프로폴리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년간 약 70톤 가량 생산되는 국산 프로폴리스가 사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폴리스의 주세법을 제외할 경우 현재 25억원에 이르는 국내 프로폴리스 원료시장이 300톤에 150억원, 그리고 시장규모면에서 2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서 참석한 국무위원 및 대책위원들에게 프로폴리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손재형 소장의 안건 발의에 뒤이어 답변에 나선 이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양봉농 가들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프로폴리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양봉업계는 프로폴리스에 대한 본격적인 제품개발이 가능케 되고 이를 통한 수익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국무조정실에 건의된 내용(7월 23일)

◎ 협회 건의사항

1. 현황

- 제조과정에서 알콜성분을 불가피하게 다량 함유(약52%)하게 되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해서
 - 국세청은 “알콜성분이 1% 이상인 음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주세법 적용
- ※ 주정과 알콜성분 1%이상의 음료(희석,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포함)에 대해서는 주세법이 적용
 - 이에 따라 높은 세율(기타주류 72%), 엄격한 면허, 지정된 주류도매상만을 통한 판매 등 일반식품에 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음
- ※ 프로폴리스추출물, 미림(조리용 술) 등 기타주류에 대한 주세수입(2002년) : 연간 550백만원(전체 주



연구소장 손 재 형

세액 2조 6천억원중 0.02%)

2. 양봉협회 입장

- 동 식품 음용시 역겨운 맛 때문에 알콜성분 1%이하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 주세법으로 인하여 프로폴리스 추출물 원료(벌집 약 77톤)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고 주장

3. 관계부처 입장(재경부, 국세청)

- 동 가공식품은 알콜성분이 52%정도이고, 물에 희석하더라도 1%이상 될 수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류 여부 판단기준>

- 알콜성분이 1%이상이며 음용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모두 주세법 적용(알콜이 함유된 불고기소스, 조리용 맛술 등)
 - 다만, 알콜성분이 1%이상인 경우에도 용해되지 않아 음용할 수 없는 경우 비적용(양파소스, 겨자소스 등 고형물질이 포함된 식품)
 - 프로폴리스추출물에 주세법 적용을 제외할 경우, 녹용주 · 뱀술 등도 마찬가지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우려

4. 국무조정실(기업애로해소센터) 검토의견

-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에 음료류, 주류와 구분하여 별개의 식품류인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맛 · 냄새가 역겨워 원액상태로 마시기 곤란하고, 물에 희석 · 음용시에는 알콜성분이 1%미만이기 때문에 주류로 보기 곤란

※ 물 100cc에 원액 10방울(0.3cc)을 섞을 경우 알콜 농도는 0.15%임

- 동일한 성분의 제품을 외형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
 -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제조유형에 따라 페이스트(죽 형태), 액상, 캡슐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대부분 알콜성분이 1%이상)

- ‘액상’의 경우에만 주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이를 주류로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 대법원도 유사한 식품(액체조미료 “미정”)을 주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세법 적용을 제외

※ 일본, 호주, 뉴질랜드 : 우리와 유사한 주세법 규정을 갖고 있지만 프로폴리스추출물에 대해서는 주류로 보지 않아 주류 관련법의 적용을 배제

※ 대법원 판례(95년) : 액체조미료 “미정(알콜성분 8.5%)”에 대하여 역겨운 맛, 자극성 등으로 인해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결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프로폴리스추출물에 대해 주세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5. 결론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8월 중에 마련 · 운용하고, 향후 주세법 개정시 프로폴리스 및 유사 식품이 주류에 해당되지 않도록 개선